| 불자 세상보기 |

순직 소방관들을 추모하며



문윤정
수필가

火魔 뚫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자기희생 기반 둔 아름다운 행위

석란정 화재진압 중 소방관 순직
열악한 작업환경 다시 도마 위에
위험 · 진압수당 月 10만원도 안돼

선진국 소방관처럼 존경 받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원 · 관심 필요해
순직 소방관 유가족 처우 개선해야

소방관들의 작업현장은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전쟁터와 같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자신의 생명이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 길 불속으로 뛰어든다.

강릉에 위치한 석란정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두 분이 생을 마감했다. 두 분의 안타까운 죽음은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소방관들의 희생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애도를 표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퇴직을 1년여 남겨둔 故이영욱 씨는 퇴직 후의 삶을 그려보면서 가슴 두근거렸을 것이다. 임용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故이호현 씨는 소방관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을 얻은 듯 기뻐했을 것이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그들의 부푼 꿈은 한 순간에 육신과 함께 매몰되어버렸다.

사고가 날 때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처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부족한 소방인력과 낮은 봉급이다. 인력증원이 되지 않아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만큼 사망과 사고 빈도가 높다. 그들에게 합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낮은 봉급뿐만 아니라 위험근무 수당은 겨우 월 6만원, 화재진압수당은 월 8만원에 불과하다. 2007년 4만원에서 10년 동안 불과 2만원 오른 셈이다. 목숨 값이 6만원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하다.

재난의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관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소방관들처럼 '살아서는 존경의 대상이요, 죽어서는 영웅'이 되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하며, 사후 유가족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방관의 순직은 일반적인 산재 사고와도 구별해 명예롭게 하는 것과 동시에 보상금의 액수를 높여야 한다. 순직자들의 뒤에는 가족이 있다. 이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 보상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소방관들의 고통과 슬픔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자, 국가의 손실이다.

미국의 경우 1992년 의회가 만든 전국순직소방관재단(NFFF)이 유가족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매년 순직소방관 추모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 보조금과 개인, 사회단체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이 조직은 영웅 만들기가 핵심이다. 또 '소방 유가족 네트워크'를 만들어 유가족들의 정신적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도 이런 재단을 만들어 순직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이젠 국가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고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순직한 소방관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의 공간을 만들어, 그들의 이름과 죽음이 빛바래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 중 마지막 구절인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라는 구절을 떠올려 본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社 說

종단 화합 넘어 불교화합 시초되길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으로 편백운 스님의 취임부터 조계종과 태고종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이미 갈등관계를 빚고 있지만 취임식에서부터 조계종을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고야 말았다.

'선암사 절뺏기를 시도하면 조계사 절뺏기에 나서겠다'는 말에 취임식에 모인 태고종 종도들은 박수를 쳤고, 종단을 초월해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왔던 조계종 스님들은 머쓱해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이날 취임식에는 종단협 회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도 취임식에 불참했다고 하니 다행으로 보아야 할까.

태고종 측의 선암사를 지키겠다는 수호의지가 느껴졌지만 종단간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한 뿌리이며, 각 종단 내에서도 함께 화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스님들이 많다. 하지만 두 종단은 화합과 반목으로 반세기를 지내왔다.

삼국지연의에서 유명한 조식의 7보시가 있다. '콩깍지로 콩을 삶으니 콩이 솥 안에서 우네'. 한 집단의 반목 아픔을 드러낸 대목이다. 한 종단에서 나와 서로 정화, 법난으로 부르며 갈등하는 사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바깥사회에서는 남과 북이 핵개발로 연일 도발과 대응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시국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두 종단의 다툼은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선사할 뿐이다.

불교에 대한 실망은 전체 불교계가 감당해야 한다.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태고종은 대사면을 선언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두 종단이 종단간 화합을 선언, 불교화합의 시초를 만들길 기원한다.

호스피스 환자의 외침을 듣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교계는 호스피스에 대한 준비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병원전법단, 전국비구니회 등이 개별적인 자체 교육을 실시할 뿐 종단 차원의 표준화된 교육체계가 없어 일반사회로부터 공신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약 1년 전, 조계종 포교원은 활동영역이 일부 겹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불교호스피스협회와 병원전법단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각 교육과정을 종단이 인증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해가 되면 연찬회를 열겠다고 전했으나 법 시행에 발맞춰 대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00명이 넘는 불교호스피스 활동가가 배출됐음에도 현장에 남은 스님이 10%에 불과하다는 소식은 불교계가 그동안 호스피스에 얼마나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동안 제 발로 법당을 찾아온 사람들 위주로 법을 전하고,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손길을 내밀지 못한 과거가 또다시 이어지는 셈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불자임에도 불교호스피스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임종 전 개종한다는 서글픈 얘기가 간간히 관계자들로부터 들린다. 이 모습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강조하는 불교 본연의 가르침에 결코 맞지 않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불교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니다. 작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이가 불교를 찾는다면 따뜻한 손길 내밀 수 있는 방법을 사부대중이 함께 연구해야 한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재미있는 불교를 위해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어린 조카에게 불교는 낯선 곳
재미난 불교를 전해야 '포교'

일본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박사학위를 받기 전까지 잠깐의 백수생활을 할 때였다. 마침 내가 머물던 곳 바로 가까이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스님께서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신 조그마한 절이 있었다. 덕분에 거의 날마다 찾아가서 짧게나마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며 기도하는 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지 스님께서 절에 특히 남성 신도가 적으니 간부를 맡아 사찰일 좀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러고 보니 절에 주로 나오는 신도님들의 연령대는 50~60대가 많아서 어린이반을 제외하면 내가 가장 '젊은이'였다.

그래서 딱히 '간부'라기보다는, 때마침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올 때라 일손도 부족했기에 나는 스님 말씀대로 좀 더 자주 절에 나가며 간부님들의 일을 도와 드리기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 보니 정작 '젊은' 나는 지치는데 신도님들은 모두 지극한 불심으로 절일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셨다. 그런 모습에 숙연해짐과 동시에 불자인구 300만 명 감소 시대의 숙명인지 '절에 젊은 신도가 이렇게 없어서야!' 하는 안타까움을 피부로 느꼈다. 불교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좋아야 할 텐데 왜 젊은이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걸까?

작은 사찰들은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법회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 · 고등학생들이 부모님 따라 어쩌다 절에 한번 와도 불교에 대해 딱히 공감할 바도 없고, 또래도 없으니 오래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결국 법회 때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법회가 끝나면 친구를 만나러 급히 떠나는 게 일이다보니 두 번 다시 절에 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재미가 없어서일 것이다.

언젠가 한 번은 꼬맹이 조카 녀석을 데리고 절에 간 적이 있었는데 녀석 왈, 불화 속 주인공들(신중님들)이 너무 무섭다나…. 녀석에게는 절이라는 곳이 TV에서 봤던 무속인들의 집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하고 있으니 두 장소를 동일시하는 듯했다. 나름대로 불교를 전공한 삼촌이니 꼬맹이에게 아주 쉽게 불교와 무속의 차이를 설명해 준 것 같은데-물론 쉽지는 않았다- 녀석 역시 두 번 다시 나를 따라 절에 가기를 거부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나는 이번 학기 '불교철학과 대중문화-영화로 불교 읽기'라는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다. '영화를 통해 불교 이해하기'는 어찌 보면 흔한 방법론일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젊은 학생들이 불교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하는 고민 끝에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개설한 과목이다.

학문 탐구에 대한 열정인지 혹은 영화를 보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는 바람에 분반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난 첫 시간부터 오직 하나만 다짐했다. 무조건 '재미있게' 강의하리라, 20대에게 불교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하니까!

〈바로 잡습니다〉 1166호 A19면 가야불교문화축제 관련 기사 내용 중 '김해출신 홍도야 우지마라 김영춘 가요제'와 '통돼지 바비큐 판매'는 진행되지 않았음을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승려연수
진화의 원동력인 자기 불성을 밀어라
불교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
한나무인성교육 '꽃을 피우는 나무'
■일 정 : 2017년 11월 9일(목) ~ 11일(토), 2박 3일(숙박형)
■장 소 : 한국문화연수원(충남 공주 소재)
■정 원 : 30명
■교 육 비 : 20만원, (재)한마음선원과학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마 감 : 2017년 11월 2일(목)
■문의/신청 : 031-470-3196, 3200 (매주 화~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다음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대한불교원효종 관련 판결문

주문
① 위 당사자 등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008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7.5.18 에 한 가처분결정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②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①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들 및 황의용, 신춘복, 김종호, 국순철, 강순주, 차유정, 이춘근, 김순석, 이동수(이하 피신청인들 및 황의용 등'이라 한다)는 신청인 및 손영채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5.18. 위 신청을 받아들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 및 황의용 등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6. 28. '피신청인들 및 황의용 등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7카소100120호).

다, 피신청인들은 위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피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처분 채권자들만 위 제소기간내인 2017.7.10.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② 판단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된 때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호 제3항,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0

재판장 판사 손봉기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 석